

대전광역시의회 공고 제2016-118호

「효문화진흥원 시설운영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16일

대전광역시의회 의장

효문화진흥원 시설운영 조례안 예고

1. 제정이유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하기 위하여 효문화 진흥과 관련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고 효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효문화진흥원의 시설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효문화진흥원의 위치를 정함(안 제2조).

나. 효문화진흥원의 개관시간 및 휴관일을 정함(안 제3조).

다. 효문화진흥원의 사용료 및 이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부터 제8조까지).

3. 의견제출

가.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1월 21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의회(참조 : 복지
환경수석전문위원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35242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대전광역시의회 의회사무처 복지환경수석전문위원실)

(전화 042-270-5127, FAX 042-270-5039, E-mail : pooh7298@korea.kr)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컴퓨터통신, 직접방문 등

4. 제정 조례안 : 붙임

효문화진흥원 시설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효문화진흥원의 시설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효문화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은 대전광역시 중구 뿌리공원로 47(안영동 71-1, 2번지)에 둔다.

제3조(개관시간 및 휴관일) ① 진흥원의 개관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다만,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진흥원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관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진흥원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월 1일, 설날, 추석
2.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
3. 그 밖에 진흥원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휴관일

③ 시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개관시간을 조정하거나 제2항제3호에 따라 휴관일을 지정하는 경우 사전에 진흥원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시설 사용) 진흥원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5조(사용료 징수) 진흥원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표 1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이용료 징수) ① 진흥원의 전시체험관과 효문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자는 별표 2의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진흥원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하여 이용료를 감경할 수 있다.

제7조(사용료 및 이용료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중 대관시설 사용료를 감면한다. 이 경우 제1호는 면제를, 제2호 및 제3호는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대전광역시에서 주최하는 행사
2. 국가 또는 대전광역시가 후원하는 효문화 진흥 관련 비영리 목적의 행사
3. 그 밖에 시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시체험관 이용료 및 효문화 프로그램 이용료를 감면한다. 이 경우 전시체험관 이용료는 제1호부터 제11호까지는 면제를 제12호는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고, 효문화 프로그램 이용료는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증 및 국가유공자유족증 소지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증 소지자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증 및 독립유공자유족증 소지자
5.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증 및 5·

18민주유공자유족증 소지자

6.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소지자. 이 경우 장애등급이 1급부터 3급까지인 경우에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증 소지자

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증 및 특수임무유공자유족증 소지자

9.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10.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명예시민증 소지자

11. 「대전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꿈나무사랑카드 소지자

1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사용료 및 이용료 반환) 사용료 및 이용료의 반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9조(위탁) 시장은 진흥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사 용 료 (제5조 관련)

시 설 명		이용기준	사용료	비 고
대관시설	대 강 당	1회 4시간	200,000원	·1회 4시간 초과 시 시간당 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가산하되,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강 의 실	1회 4시간	50,000원	
부속시설	피 아 노	1회 4시간	40,000원	
	무대조명	1회 4시간	30,000원	
	빔프로젝트	1회 4시간	30,000원	
	음향반사판	1회 4시간	30,000원	
	냉·난방시설	1회 4시간	150,000원	
	유선 마이크	1개 (기본)	2,000원	·기본 1개를 제외하고 1개 추가사용 시 마다 2,000원
무선 마이크	"	3,000원	·기본 1개를 제외하고 1개 추가사용 시 마다 3,000원	

[별표 2]

이 용 료 (제6조제1항 관련)

1. 전시체험관 이용료

구 분	금 액		비 고
	개 인	단 체	
어린이·청소년	2,000원	1,500원	단체 : 20명 이상
어 른	3,000원	2,500원	

- “전시체험관”이란 효이해실, 효느낌실, 효공감실, 효실천실, 효나눔실 등 효문화 관련 체험 및 교육 시설을 말한다.
- “어린이·청소년”이란 3세 이상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 “어른”이란 19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효문화 프로그램 이용료

가. 효예절실 및 노년생애체험실 등에서 실시하는 효문화 프로그램을 말한다.

나. 효문화 프로그램의 이용료는 1일 30,000원, 1개월 150,000원 이하의 금액으로 프로그램의 내용에 따라 대전광역시장이 산정한 금액

[별표 3]

사 용 료 및 이 용 료 반 환 기 준 (제8조 관련)

구 분		반 환 기 준
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전액 반환
2. 허가권자의 귀책사유로 취소하는 경우	가. 사용료	
	○ 사용일 7일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 전액 반환
	○ 사용일 6일전부터 사용일 전일까지 취소하는 경우	○ 전액 반환 및 총 사용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배상
	○ 사용일 이후 취소하는 경우	○ 사용한 일수만큼 일할 계산한 나머지 금액 반환 및 총 사용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배상
	나. 전시체험관 및 효문화 프로그램 이용료	
	○ 사용일 전일까지 취소하는 경우	○ 전액반환
	○ 사용일 이후 취소하는 경우	○ 사용한 일수만큼 일할 계산한 나머지 금액 반환 및 총 사용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배상
3.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취소하는 경우	가. 사용료	
	○ 사용일 7일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 전액 반환
	○ 사용일 6일전부터 사용일 전일까지 취소하는 경우	○ 총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반환
	○ 사용일 이후 취소하는 경우	○ 총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제외한 금액에서 사용일수만큼 일할계산한 금액을 제외한 차액 반환
	나. 전시체험관 및 효문화 프로그램 이용료	
	○ 사용일 전일까지 취소하는 경우	○ 전액반환
	○ 사용일 이후 취소하는 경우	○ 총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제외한 금액에서 사용일수만큼 일할계산한 금액을 제외한 차액 반환 ※ 전시체험관 이용료는 반환불가

관계 법령

□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효문화진흥원의 설치) ① 효문화 진흥과 관련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효문화진흥원을 설치할 수 있다.

② 효문화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효문화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효문화진흥원의 설치요건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8조(효문화진흥원의 업무) 효문화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효문화 진흥을 위한 연구조사
2. 효문화 진흥에 관한 통합정보 기반구축 및 정보제공
3. 효문화 진흥을 위한 교육활동
4. 효문화 프로그램에 관한 개발 및 평가와 지원
5. 효문화 진흥과 관련된 전문인력의 양성
6. 효문화 진흥과 관련된 단체에 대한 지원
7.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효문화 진흥과 관련된 업무

제13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효행장려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지방자치법

제136조(사용료)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39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②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제144조(공공시설)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공공시설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밖에 설치할 수 있다.